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 1. 12. 시행) 취지를 고려하여 보충역 및 대체역으로 복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맞춰, 정무직으로 임용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연봉을 설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항제2호 중 “132만6천원”을 “135만9천1백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영 제3조의 5”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을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휴직한”을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7만5800원으로”를 “7만7700원으로”로, “7만4100원”을

“7만60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815만2천원”을 “835만6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94만3천원”을 “916만7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94만3천원”을 “814만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26만1천원”을 “949만3천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휴직한”을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월액(성과 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보충역”을 “보충역·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표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별표 2 제2호의 환산율란 중 “50퍼센트 이내”를 “50퍼센트 이내, 8)의 경력은 10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복무 경력

별표 3 제2호에 나목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	--------

별표 4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복무 경력

별표 4 제2호에 나목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 중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급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심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 임 호 봉	비 고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제외) 및 별정직 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확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확정 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확정 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 확정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 한 호봉보다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확정 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복무기간의 인정은 최장 3년으로 한다.
1의2. 지방전문경력관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확정 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확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확정 한 호봉보다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확정 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복무기간의 인정은 최장 3년으로 한다.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연구직공무원	[별표 3]에 의하여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확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확정 후 연구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연구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3)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 확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호봉보다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복무기간’이라 한다) 또는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확정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복무기간의 인정은 최장 3년으로 한다.

	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지도직공무원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을 지도관·지도사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나.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호봉을 확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관호봉을 확정 한 후 지도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하며, 지도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3)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 확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 한 호봉보다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복무기간’이라 한다) 또는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확정 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다만, 이 경우 복무기간의 인정은 최장 3년으로 한다.
4. 교육전문직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5. 전문대학·대학교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② 삭제 ③ ~ ⑩ (생략)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u>132만6천원</u> 을 뺀 금액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135만9천1백원</u> ----- 원-----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제8조(초임호봉의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확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
 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
 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
 여 확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
 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
 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
 에 대하여 확정하고, 「지방공
 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
 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확정한다.

③ ~ ⑤ (생략)

제15조(특별승급) ① (생략)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

 ----- 「지방공무원
 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
 무원법」 제26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
 조의2제2호 및 제3호 또는 「공
 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제4호---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 「지방공무
 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의15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
 령」 제57조의3제1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승급) ① (현행과 같
 음)

②-----

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략)

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⑦ (생략)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
-----.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항 및 제4항-----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

-----.

1. (생략)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휴직</u>한 경우 3. (생략) ②·③ (생략)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u>7만5800원</u>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u>7만4100원</u>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6조(승진시 연봉 책정) ① (생략)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	1. (현행과 같음) 2. ----- ----- ----- -- <u>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한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7만7700원</u> <u>으로</u>----- <u>7만6000원</u>----- ----- -----. 제36조(승진시 연봉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5만2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94만3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94만3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26만1천원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생략)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1. -----

835만6천원-----

2. -----

916만7천원

3. -----

814만1천원

4. -----

949만3천원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

3. (생략)

②·③ (생략)

<신설>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① 4급 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액과 제25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이 더 큰 기준을 적용하여 연봉을 감액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